

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상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  
발의자 : 박상혁 · 허영 · 이해식  
한민수 · 진선미 · 정준호  
한병도 · 채현일 · 이연희  
김주영 · 최혁진 · 강준현  
김영환 · 한준호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.

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

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).

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공공임대주택 내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9조의9(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) ①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49조의9(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<u>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임 대기간 종료 후 새로 가정어린 이집을 설치 · 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· 운영하 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</u></p>